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79
----------	-----

2020. 3. 12.(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정상교 의원 등 6인

나. 발의일자 : 2020년 3월 4일

다. 회부일자 : 2020년 3월 5일

라. 상정일자 : 2020년 3월 12일

-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상교 의원)

가. 제안사유

- 도내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광고물 표시방법 규정(안 제2조, 제8조)
- 그림자 조명 표시방법 규제 개선(안 제7조, 제8조의2, 제20조)
- 유리벽면을 이용한 벽면이용 광고물 수량제한 완화(안 제8조)
- 벽면이용간판 층수제한 완화(안 제8조)
- 가로등 현수기 규격 규정(안 제12조)
- 옥외광고발전기금 근거 마련(안 제30조 ~ 제3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보흠)

- 이 조례안은 도내의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및 제8조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광고물 표시방법 규정을
 - 안 제7조, 제8조의2, 제20조에서는 그림자 조명 표시방법 규제 개선을,
 - 안 제8조에서는 유리벽면을 이용한 벽면이용 광고물 수량제한 완화와 벽면이용간판 층수제한 완화를,

- 안 제12조에서는 가로등 현수기 규격 규정을,
- 안 제30조에서 제32조까지는 옥외광고발전기금 근거 마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이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37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정상교 의원 등 6인
발의연월일	2020년 3월 4일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상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79
----------	-----

발의연월일 : 2020년 3월 4일

발 의 자 : 정상교, 전원표, 허창원,
송미애, 연철흠, 이옥규

1. 개정이유

- 도내 아름다운 도시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규정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 근거를 마련하여 옥외광고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광고물 표시방법 규정(안 제2조, 제8조)
- 그림자 조명 표시방법 규제 개선(안 제7조, 제8조의2, 제20조)
- 유리벽면을 이용한 벽면이용 광고물 수량제한 완화(안 제8조)
- 벽면이용간판 층수제한 완화(안 제8조)
- 가로등 현수기 규격 규정(안 제12조)
- 옥외광고발전기금 근거 마련(안 제30조 ~ 제3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관련부서 협의 : 문화체육관광국 건축문화과와 협의함.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첨부

라. 입법예고 : 2020. 2. 13. ~ 2020. 2. 23.(10일간)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 제3항제1호 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2개 이내

제7조제1항에 “라목”을 “마목”이라 하고, 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는”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에는”으로 한다.

4.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다만, 이 경우 제8조의2의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그 밖에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8조제1항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마. 영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건물의 5층 이하의 도로에 접한 벽면에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3층 이하의 층에는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 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과 전자빔은 영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
- ③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
2. 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영상표시장치 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네온류·전광료”를 “네온류·전광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하며,”를 “하며,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단일형”을 “단독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개 이상의 지주에)”를 “(하나의 게시시설에 3개 이상의)”로, “지주는”을 “지주 또는 게시시설은”으로 한다.

- ⑥ 영 제29조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단서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는 애드벌룬은 수평거리를 적용하지”를 “단서에 따른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을 하는 경우 애드벌룬으로 보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시장 또는 군수는”을 “시장·군수는”으로 하고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를 “시·군의 시장·군수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위해”를 “위해(危害)로 하고 “시장·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20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노면(제7조제4호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제3항 중 “신청·신고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시”를 “신청·신고 시 또는 안전점검 신청 시”로 하고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③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광고물 정비
2. 경관개선
3. 간판정비사업
4.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축문화과장, 기금출납원은 옥외광고 관련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여유자금에 대하여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32조(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발전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벽면이용간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생략)</p> <p>② (생략)</p> <p>1. ~ 7. (생략)</p> <p><신 설></p>	<p>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영 제3항제1호 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측면 또는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2개 이내</u></p>
<p>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 라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신 설></p>	<p>제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17조제1호 마목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다만, 이 경우 제8조의2의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문자·도형 등을 투사하여 보도의 노면에 표시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물만 표시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표시방법·표시장소 또는 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5. 그 밖에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p>
<p><신 설></p>	

현 행	개 정 안
<p>② <u>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u>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중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와 그 밖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3호의 표시방법에 따라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p> <p>① (생략)</p> <p>1.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 라. (생략)</p> <p><신 설></p>	<p><u>의를 거쳐 인정하는 공공시설물</u></p> <p>② <u>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5호</u>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화면변환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광역단위 광고물 중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와 그 밖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중 시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제3호의 표시방법에 따라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p> <p>제8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1.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영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라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u></p>

현행	개정안
<p>2. ~ 3. (생략)</p> <p>4. <u>건물의 3층 이하의 도로에 접한 벽면에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경우 시 지역은 7층 이하, 군 지역은 5층 이하의 층에는 입체형으로만 표시할 수 있다.</u></p> <p>② ~ ④ (생략)</p> <p><신설></p>	<p><u>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3층 이하의 유리벽 바깥쪽에 유리벽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간판. 다만,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유리벽의 바깥쪽에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u></p> <p>2. ~ 3. (현행과 같음)</p> <p>4. <u>건물의 5층 이하의 도로에 접한 벽면에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3층 이하의 층에는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u>영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할 수 있으며, 매다는 방식으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해당 간판은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에는 도지사가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할 수 있다.</p>
<p><신설></p>	<p>제8조의2(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의 표시방법) ① 영 제4조제1항제12호다목에 따른 디지털홀로그램(이하 “홀로그램”이라 한다)과 전자빔은 영 제3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각 광고물등의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표시방법을 따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③ 홀로그램 및 전자빔의 영상표시장치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거치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이 조에서는 “영상표시장치등”이라 한다)은</p>

현행	개정안
<p>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생략)</p> <p>1. ~ 5. (생략)</p> <p>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계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 <u>네온류·전광표</u>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p> <p>7. (생략)</p> <p>② (생략)</p> <p>1. ~ 3. (생략)</p>	<p><u>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u></p> <p>1. <u>영상표시장치등은 도로나 인도 또는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시설물 등에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시·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다.</u></p> <p>2. <u>영상표시장치등은 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u></p> <p>3. <u>영상표시장치등을 건물의 옥상 또는 내부에 설치할 경우 옥상난간, 외벽 또는 창문 등의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u></p> <p>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현수막 게시시설(지정계시대를 포함한다)과 현수막에 <u>네온류·전광류</u>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사용하는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p> <p>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p> <p>③ (생략)</p> <p>④ (생략)</p> <p>1. (생략)</p> <p>2. <u>단일형(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u>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가. ~ 다. (생략)</p> <p>3. <u>연립형(2개 이상의 지주에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u>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가. ~ 나. (생략)</p> <p>⑤ (생략)</p> <p><신설></p> <p>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생략)</p>	<p>4.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u>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u> 출입문·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단독형(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u> 지주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3. <u>연립형(하나의 게시시설에 3개 이상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u> <u>지주 또는 게시시설은</u>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u>영 제29조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u></p> <p>제1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1. ~ 3. (생략)</p> <p>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는 애드벌룬은 수평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5. (생략)</p> <p>6. <u>시장 또는 군수는</u>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u>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u>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7. ~ 8.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19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 ② (생략)</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u>위해</u>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u>시장·수가</u> 제한</p>	<p>1. ~ 3. (현행과 같음)</p> <p>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제3호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 적용을 하는 경우 애드벌룬으로 보지 아니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6. <u>시장·군수는</u>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u>시·군의 시장·군수와</u>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p> <p>7. ~ 8.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건물면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광고물등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u>위해(危害)</u>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거나, <u>시장·군수가</u></p>

현 행	개 정 안
<p>사항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한사항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p>
<p>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생 략)</p> <p>1. ~ 6. (생 략)</p> <p>7. <u>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u></p> <p>8. ~ 9. (생 략)</p>	<p>제2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노면(제7조제4호에 따라 보도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8. ~ 9. (현행과 같음)</p>
<p>제28조(수수료) ① ~ ② (생 략)</p> <p>③ <u>수수료는 허가의 신청·신고시 또는 안점점검 신청시에 수입증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u></p>	<p>제28조(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수수료는 허가의 신청·신고시 또는 안점점검 신청 시에 수입증지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신 설></p>	<p>제30조(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u>도지사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30조(시행규칙) (생략)</p>	<p>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옥외광고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발전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p> <p>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고, 발전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제3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p>

현행	개정안
	<p>다.</p> <p>제3조(벽면이용간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표시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p>

관련법령 발취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① 시·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2.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 1. 6.>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벽면 이용 간판 : 다음 각 목의 것

-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 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이라 한다)의 차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문자·도형 등을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제12조(일반적인 표시방법)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제4항 제1호

○ 사 유

-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